

제27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, 2022.06.21.(화) 10:00

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

1. 제안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-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거나 군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시 군장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장례 구분,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(안 제1~3조)

- 장례 구분 : 군장, 군민장, 군청장으로 구분
- 적용 범위 : 장례의식 중 영결식에 한하되, 필요한 경우 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
나. 군장 등의 대상자(안 제4조, 제5조)

- 군 장 : 현직 군수, 현직 의회의장
- 군민장 : 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
- 군청장 :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직 근로자

다. 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~10조)

라. 장례 기간 및 장례 공고(안 제11조, 제12조)

마. 장례비용(안 제13조)

- 군장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근거 규정

4. 관계법령 : 「국가장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지역사회의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령군 군장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조문을 살펴보면,

안 제2조는 장례를 군장, 군민장, 군청장으로 구분하고, 제3조에서는 장례의 범위를 영결식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제4조는 각 장례의 대상자를 규정하고

제5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

제11조는 장례 기간, 제12조는 장례 공고, 제13조는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본 조례는 법령 입안·심사기준에 적합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, 우리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하여 사망 후에도 훌륭한 업적을 기리며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의식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,
- 조례안 제4조의 군민장 대상자의 경우
“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” 과
“재난·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령군민” 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
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
향후, 군민장이라는 공공성에 부합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
생각됩니다.